

#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위축으로 고용 시장 어려움 지속과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7월 1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I 신청기간 및 대상 (7.1.기준)

□ 신청기간 : 2020. 7. 1.(수) ~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 지원

※ 예산 소진 시, 별도 통지 없이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방문 접수

○ E-mail : [youngcha@itp.or.kr](mailto:youngcha@itp.or.kr)

※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E-mail 주소 작성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 우편·방문 접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 스마트타운 14층 청년지원센터

- (선정) 서류 적격 확인, 예산 범위 내 신규청년 채용 통보 순으로 지원 여부 결정

□ 신청대상

○ (기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인천소재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본사 기준으로 인천시 소재기업

-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중소기업진흥기법에서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또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인증기업

③ 지식기반서비스업

④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 (청년) 인천시 거주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근로개시일 1일 전 주민등록 기준으로 판단
  - ※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 근로개시일 전일까지 전입신고 완료 시 참여가능
  - ※ 기채용자는 지원불가
  - ※ 청년은 기업선정 후, 기업에서 별도로 워크넷, 사람인 등 구인공고를 통해 신청 및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에서 참고

□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건)

구분	세부내용	비고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1] 및 고용계획서[서식2] ② 개인(기업)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협약 등 동의서[서식3]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⑥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⑦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⑧ 사업지원금 사용 준수 협약서[서식13-1] * 해당시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채용가능인원의 10% 추가배정)	첨부파일 참고

※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결과안내는 지연될 있습니다.

II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청년 교육 등 지원

○ (기업) 인건비 지원 : 신규채용 청년 1인 1,687,500원 지원

- 채용 청년 인건비 월1,875,000원 지급 조건으로 인건비 구성항목은 기본급,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여 지급(비정기적 수당, 가산임금 별도)
- 일 경험 기회 제공(인턴 3개월) 및 정규직 채용(3개월) 소요 인건비 지원

구분	부담 주체	부담률	부담 내용
지원금	국·시비 보조	90%	- 1,687,500원 × 6개월
자부담	참여기업	10% 이상	- 187,500원 × 6개월 - 4대 사회보험 요율에 의한 기업부담
	참여청년	개인부담	- 4대 사회보험 요율에 의한 개인부담

※ 기업은 인건비 10%를 필수로 부담하며, 추가 부담하여 급여를 조정 가능

○ (청년) 자기개발 활동비, 기타 교육 지원

- 자기개발 활동비 지원금 직접 지원

- 지원금액 : 월 100,000원 × 3개월(인턴기간)

※ 월 지원한도 초과액은 청년 부담

- 기타 교육 : 청년 간 연대감 형성, 지역의 이해와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위한 컨설팅, 네트워킹 등 지원(필수 20시간 이수, 별도 안내예정)

※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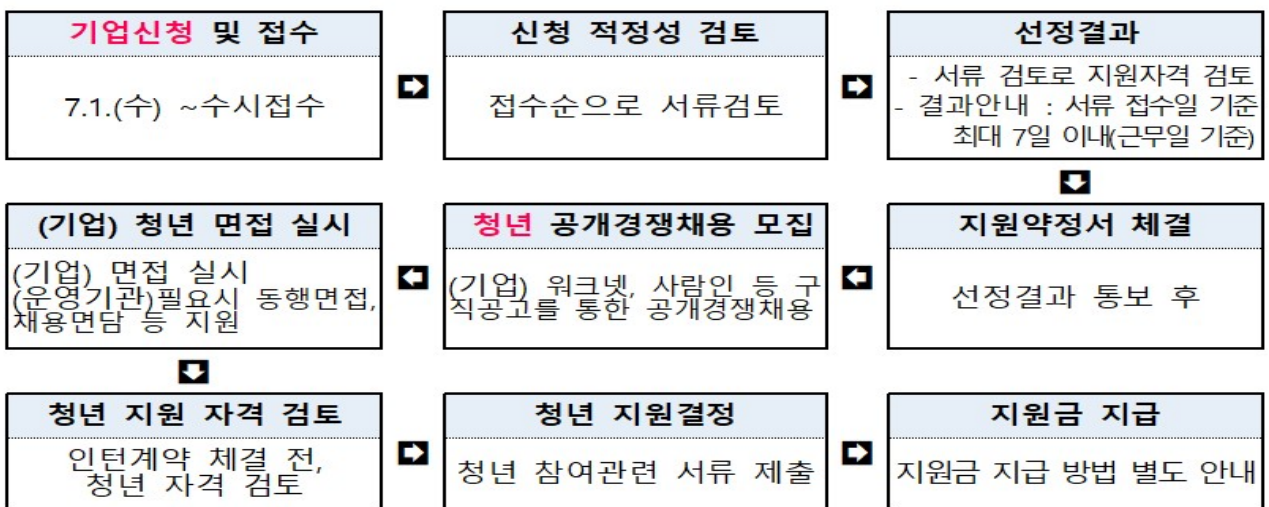
○ 채용한도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구분	채용 한도(소수점 이하 절상)
5인 미만	- 5인 미만 지원 대상 확인 필수 - 상시근로자의 20% 이내
5인~10인 이하	- 상시근로자의 30% 이내
10인 초과	- 상시근로자의 20% 이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채용가능 인원의 10% 추가배정 - 제출서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정규직 전환율 80% 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의 20% 추가 배정

※ 본지사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본·지사 전체인원으로 채용 한도

EX. 상시근로자 수 6인의 경우 : 6 \* 30% = 1.8 → 소수점이하 절상하여 2명 채용 지원

□ 세부일정



## □ 제외대상

## ○ 기업

- 소비·향락업체<sup>1)</sup>,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 업체 등 포함)
-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3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인 기업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및 인건비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성격의 기관도 포함
-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 부터 인력지원을 받는 기업은 일부 지원금에 한해 신청은 가능하나 해당 참여청년은 중복가입 불가
  - 고용노동부 추가고용장려금, 유연근무제 지원 등
  - 단, 정규직 전환 후, 내일채움공제는 중복 가입 가능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 단, 사업주(또는 공동사업주)로만 구성된 1인 기업 등에 한하여 인턴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인턴 채용 후 반드시 인턴을 고용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미가입시 선발 취소 및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인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해외법인의 국내기업 및 지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상태인 사업장
- 

1) 소비·향락업체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품감상실업, 이 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 ① 은행, 보험업
  - ②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
  - ③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운수업 등) ※ 상주근로자에 한해 지원
  - ④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관리직의 경우 신청 가능)
  - ⑤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지원대상 자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 청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대학 및 고교 재학생 및 병역 특례자
  - ※ 병역특례 채용일 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
- 인턴으로 채용되기 이전에 인턴 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기업 대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 소정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자
- 재택 근무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반복 참여 중인 자
  -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및 기타 청년일자리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 청년근로자 선발

- 청년기업은 지원대상 선정 이후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람인 등 채용사이트를 활용한 공개모집 및 공정한 경쟁 절차를 통해 선발하여야 함.
- 기업선정 이후, 공고등록 및 입사지원서 검토, 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고내용과 채용과정에 대한 증빙사료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참여청년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또는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 청년 근로조건

- 인턴고용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조기에 정규직 전환 가능)
  - ‘정규직’이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5일 근무, 주 40시간)
  -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등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 가능
- 4대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필수 가입
- 근무지 :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사업장
- 주된 업무가 국내·외 출장이 빈번한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근태관리 : 지문, 카드 인식 시스템, 출퇴근 근로카드 등에 의한 근태 관리

**※ 기타 세부사항은 2020년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본 사업은 신청만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기업선정 이후 진행절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채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운영기관은 사업 기간 내 참여기업에 대해 매출액, 고용현황 등 필요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